

예 산 총 칙

201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17,419,377	36,522,581
일반회계	1,000,805,404	30,024,162
특별회계	216,613,973	6,498,419
공기업특별회계	170,296,072	5,108,88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6,268,275	2,288,04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4,027,797	2,820,834
기타특별회계	46,317,901	1,389,537
주택사업특별회계	50,000	1,50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274,131	218,224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9,765,000	592,950
교통사업특별회계	14,594,800	437,844
대지보상특별회계	1,000,000	30,000
기반시설특별회계	20,000	600
수질개선특별회계	2,909,970	87,299

제 2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4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4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4,720,515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4년도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